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시설인 도서관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간이휴게소로 명시하고, 친
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수소연료공
급시설에 각각의 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며, 화훼전시 판매시설의 설치
자격을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주유소 등의 설치자격을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
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은 부과대상에서 제
외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면적에”를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에”로, “면적은”을 “면적 및 건축물의 바닥면적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미 부담금이 납부된 건축물

제4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 시기나 완료시기를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3.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때부터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시기까지

별표 1 제3호바목마) 중 “한정한다.“를 ”하며, 부대시설로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버목가) 중 “세차시설“을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세차시설“로 하며, 같은 호 저목가) 중 ”세차시설“을 ”수소연료공급시설, 세차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마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시·군·구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화훼농가 현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공고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별표 1 제5호마목10)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를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 ----- ----- ----- --.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u>면적</u> 에 다음 각 목의 토지의 <u>면적</u> 은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가. ~ 다. (생략) <u><신 설></u>	1. ----- ----- <u>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u> 에 --- <u>면적 및 건축물의 바닥면적</u> 은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이미 부담금이 납부된 건축물</u>
2. ~ 5. (생략) ②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를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3.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때부터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시기까지 ③ ~ ⑥ (생략)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3745